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21
----------	-------

발의연월일 : 2026. 6. 30.

발 의 자 : 차규근 · 서왕진 · 김재원
황운하 · 이해민 · 신장식
백선희 · 정춘생 · 강경숙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구속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 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적법성·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통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건의 입건 통보, 담당 검사 지정 및 협력) 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그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의 입건 사실과 담당 사법경찰관의 배당 사실을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에 관한 협력 및 수사 통제 업무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이하 “담당 검사”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협력 및 수사 통제에 필요한 범위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열람할 수 있다.

④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이하 “담당 사법경찰관”이라 한다)과 담당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보, 제2항에 따른 담당 검사 지정, 제3항에 따른 열람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의 제시·교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변사자 검시에 따른 통보 및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라 검시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검사에게 검시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5조(피의자 출석요구에 따른 통보 및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검사에게 출석요구 사실과 조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6조(증인신문 청구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검사와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할 사항, 증인신문의 필요성,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체포영장 신청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검사와 해당 피의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 체포 요건,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8조(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협력)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검사와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구속 요건,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등에 관한 협력) ① 담당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 검사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필요성, 대상과 범위, 법령의 적용 등에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② 담당 사법경찰관과 담당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장을 집행한 후 그 집행 결과와 후속 수사 사항 등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교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완수사요구) ① 담당 검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협력 과정에서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이행 및 그 결과의 통보와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보완수사요구 등에 따른 사건번호 및 배당의 유지) ① 검사가 제10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사건의 수사기관 사건번호와 담당 사법경찰관 및 공소청 사건번호와 담당 검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